

懸案分析 93-10

러시아 聯邦憲法
- 解說과 全文 -

1993. 12.

연구자 : 박영도(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 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目 次

| | |
|---------------------------------|----|
| I. 머리말 | 1 |
| II. 러시아憲法の 制定經過 | 3 |
| 1. 러시아 國家主權宣言과 憲法改革의 着手 | 3 |
| 2. 法委員會의 第1次 憲法案의 提出 | 4 |
| 3. 漸進的 憲法改革의 實行 | 5 |
| 4. 憲法委員會의 第2次·第3次 憲法案의 提出 | 6 |
| 5. 保革葛藤의 深化와 第4次 憲法案의 否決 | 8 |
| 6. 國民投票의 實施와 議會解散措置 | 9 |
| 7. 新憲法案의 마련과 國民投票의 實施 | 11 |
| III. 新憲法の 特徵과 主要內容 | 11 |
| 1. 基本的人權에 관한 規定 | 12 |
| 2. 國家權力에 관한 規定 | 13 |
| 〈附 錄〉 | |
| 러시아연방헌법 | 21 |

I. 머리말

러시아는 지난 1991년 4월 大統領制를 도입한데 이어 그해 8월 보수강경파의 쿠데타실패에 따른 共產黨의 해체와 蘇聯邦崩壞 등 급격한 국가 및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었으나,¹⁾ 憲法은 지난 1977년에 제정된 의회중심의 舊蘇聯憲法²⁾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대통령과 의회중 어느 한쪽도 절대적인 權力主體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상의 권력구조가 保·革勢力間의 권력투쟁을 야기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러시아 憲法體系의 혼란은 지난 1990년 3월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이 臨時 人民代議員大會를 개최하여 改革政策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력한 행정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大統領制를 신설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즉, 既存 憲法에서 각료들은 최고회의에 의해 선출되고 最高會議에 책임을 지는 의회중속기관이었으나,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제를 신설, 閣僚會議(정부)를 대통령아래에 두면서 관련조항

- 1)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창설경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국공동체의 출범」, 主要國際問題分析 1991.12. ; 同, 「독립국가연합헌장의 채택과 CIS체제의 장래」, 主要國際問題分析 1993.6. ; 姜聖男,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의 진로」, 立法資料分析 1992.3., 71~95面 등 參照.
- 2) 1977년의 蘇聯憲法(브레즈네프헌법)의 대의제도는 연방의 정치적 기초이며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인 「聯邦最高會議」 및 연방최고회의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으며 연방최고회의에 책임을 지고 報告의 의무를 지는 「聯邦閣僚會議」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7년헌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沈景秀, 「소련헌법의 발전과 그변화에 관한 연구」, 忠南大 博士論文 1990.9., 112~165面 ; 權寧高, 「브레즈네프헌법의 규범과 현실」, 法學論文集(중앙대) 제7집, 1982 ; 權寧星, 「소연방의 헌법제도에 관한 연구--특히 1977년의 브레즈네프헌법을 중심으로-」, 韓國放送通信大學論文集 제1집, 1983 등 參照.

을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료회의가 어느 機關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³⁾

러시아헌법 제121조 5항은 大統領의 權限으로서 최고회의동의하에 閣僚會議議長(총리) 임명권, 총리동의하의 閣僚任命權, 최고회의동의하의 政府解散權 등을 규정하고 인민대의원대회 및 최고회의해산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제121조 6항은 大統領이 國體 또는 국가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선거직 憲法機關의 기능을 방해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大統領制의 도입당시에는 거의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였던 이들 규정이 역설적으로 共產黨이 소멸하고 소연방이 붕괴하면서 議會의 權限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러시아는 바로 이러한 소연방헌법의 모순을 그대로 共和國憲法에 답습하게 되어 의회와 정부간의 권력투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二重權力에서 파생된 정치적 위기는 결국 유혈충돌로까지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엘친을 중심으로 한 改革派가 정치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러시아는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新憲法이 제정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國民投票를 통해 성립한 러시아신헌법을 계기로 그 동안의 러시아헌법의 제정경과에 대해 살펴본 후, 新憲法에 담겨진 주요내용 및 그 全文을 소개한다.

3) 1977년의 憲法은 그 후 부분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政治改革의 요청에 부응하여 1988년 12월과 1989년 12월에 대폭 개정되었으며, 나아가 1990년 3월에 複數政黨制·소유제도의 개혁·大統領制의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다시 이루어 졌다. 1988년, 1989년, 1990년의 憲法改正의 골격은 沈景秀, 前掲論文, 166~192面 參照. 특히 대통령제의 채택배경과 주요내용에 관한 것은 姜聖男, 「소련에서의 大統領制 採擇」, 立法資料分析 1990.6., 111~132面 參照.

II. 러시아憲法の 制定經過

1. 러시아 國家主權宣言과 憲法改革의 着手

1990년 2월에 개최된 蘇聯共產黨 확대중앙위원회총회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총회는 격렬한 논쟁을 전개하면서 특히 共產黨一黨支配의 포기와 복수정당제의 승인, 소유형태의 다양성 및 生産手段을 포함한 개인경영의 소유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 기본정책」을 채택하였다. 그 후 同年 3월 12일 부터 시작된 제3회 임시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1977년의 蘇聯憲法를 개정하였으며, 이를 전후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의 3개 연방구성공화국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러시아연방공화국에서의 人民代議員選舉에서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에서 이른바 「改革派」, 人民戰線派의 후보자가 다수의석을 획득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는 보좌의회로서의 성격을 지녔던 지금까지의 最高議會와 달리 다양한 이해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었다.

제1회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는 1990년 5월 16일에 개최되어 5월 29일 엘친을 最高議會議長으로 선출한 후, 6월 12일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주권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러시아연방공화국이 소련으로 부터의 脫退權 등을 가지는 주권국가임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주권을 정치적·경제적 및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聯邦憲法에 대한 공화국 헌법의 우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이 선언은 신러시아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헌법의 작성, 연방조약의 체결 및 공화국의 법령의 개선의 기초가 된다(제15조)」라고 하여 이 선언의 性格을 명확히

하였다.⁴⁾ 한편 동 대회에서는 6월 16일 옐친을 위원장, 하스블라토프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憲法委員會(총수 102명)를 선출하였다. 여기에는 개혁파대의원뿐 아니라 법학자, 법관 등 이른바 保守派의 지도자들도 선출되었다. 憲法委員會는 그 후 신러시아헌법안의 심의가 예정된 제2회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에서 러시아국가주권선언을 작업의 기초로 하여 新憲法案의 작성에 착수하여 憲法改革이 개시되었다.

2. 憲法委員會의 第1次 憲法案의 提出

헌법위원회는 1990년 11월 「러시아연방헌법(안)」을 공표하였다. 신헌법안은 私的 所有權 및 경제활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사회적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실현하고, 이를 경제적 기초로 하여 「市民社會」를 형성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의 형성을 논리적 전제로 自然法的 人權觀에 의거하여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를 매개로 하면서, 「主權을 가지는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창설을 구상하고 그 憲法體制의 원칙으로서 「인민권력」, 「최고의 가치로서의 인간 및 그 권리」, 「정치적 다원주의」, 「권력분립」, 「법 및 헌법의 우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체계」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 및 권한 등을 정하였으나 특히 立法權, 執行權의 구체적인 방식 및 양자의 관계에 관해서는 헌법위원회로서 통일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이 憲法委員會案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부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4)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국가주권에 관한 선언」은 前文 및 1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同全文은 日本國會圖書館 調査立法考查局, 「外國の立法」, 第30卷5號, 1991, 192~194面 參照.

비난 등이 제기됨과 동시에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회의 會派 「러시아공산주의자」에 속하는 인민대의원집단 및 전문가집단이 작성한 「러시아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헌법(기본법)안」과 法科大學의 학자그룹이 작성한 「신헌법 초안」이 代案으로서 제안되었다. 여하튼 이 헌법위원회안은 1990년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제2회 임시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에서 審議되지 못하고 헌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3. 漸進的 憲法改革의 實行

이러한 상황하에서 열친을 필두로 하는 러시아정치지도부는 당분간 個別法律의 제정, 이와 동시에 현행헌법의 一部改正에 의해 헌법위원회안이 주장한 새로운 기본구상에 관련된 제규정을 실현해가는 다음과 같은 점진적인 憲法改革을 실행하였다.⁵⁾

첫째, 1991년 3월에 公選의 대통령직의 설치의 시비를 묻는 國民投票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거한 大統領職의 도입이다(1991년 4월 24일 러시아대통령선거법 및 러시아대통령법 제정→5월 24일의 현행헌법의 일부개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大統領選舉는 6월 12일에 행하여졌으며, 열친이 초대러시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둘째, 憲法裁判所의 창설이다(1991년 5월 6일 러시아헌법재판소법 제정→5월 24일의 현행헌법의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에는 「보다 공정하고 독립된 권력인 司法權」의 담당자로서 추상적 규범통제, 憲法不服審査 등의 권한,

5) 물론 제정된 個別法律의 내용이 상기의 憲法委員會案의 내용, 나아가 헌법위원회가 그 후 공표한 제2차 및 제3차의 신헌법안의 내용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즉 헌법통제권이 부여되었다.⁶⁾

세째, 행정각부장관 및 지방행정부장관의 公選制의 도입이다(1991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제정, 10월 2일 행정부장관선거법 제정 및 1992년 3월 5일 자치구·주의 소비에트행정부법 제정 →1992년 4월 21일의 현행헌법의 일부 개정). 이것은 지방소비에트의 執行委員會(의장)을 행정부(장관)으로 개조하고 장관의 公選制를 도입함으로써 그 행정부를 지방소비에트로 부터 독립 시킴과 동시에 지방소비에트의 역할을 立法에 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혁이며, 지금까지의 소비에트형권력형태의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行政府長官의 선거는 1991년 11월 1일의 러시아인민대의원대의 결정에 의해 지방소비에트선거와 함께 1992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하지 않게 하였다.

네째, 自然法의 人權觀에 의거한 이른바 인권선언의 승인이다(1991년 11월 22일 인간 및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선언 채택→1992년 4월21일의 현행 헌법의 일부개정). 이것은 「인간의 권리, 자유, 명예 및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나아가 그 「人間의 權利」 등을 천부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그것에 「국가권력의 제한장치」로서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이다.

엘친은 제5회 임시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에서 현행의 基本法은 오늘날 「인민을 혼란시킬만큼 상호 모순된 제규범의 집합화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현행헌법은 이와 같이 점진적인 憲法改革의 결과 그 내용이 대폭 변화됨과 동시에 한층 「상호 모순된 제규범의 집합체」로 되고 말았다.

4. 憲法委員會의 第2次·第3次 憲法案의 提出

6) 卞海喆, 「러시아改革과 憲法統制」, 司法行政 1993.4., 35面.

이와 같이 「憲法改革」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헌법위원회는 신헌법안의 작성작업을 계속하여 1991년 10월에 제2차 신헌법안을 공표하였다. 이 신헌법안은 大統領 겸 憲法委員會委員長 엘친에 의해서 10월 28일부터 시작된 제5회 임시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으나, 대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憲法委員會와 최고소비에트에 인민대의원의 의견이나 제안을 고려에 넣으면서 신헌법안을 더욱 손질하여 차기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의 심의에 회부하기 위하여 그 完成案을 제출할 것을 위임하였다. 이에 대해 憲法委員會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헌법개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의 제규정등을 고려하면서 신헌법안을 보완, 그 결과 1992년 3월 최고소비에트위원회, 각원의 상임위원회등에 심의를 위하여 제3차 신헌법안을 제출하였다. 憲法委員會는 그 후 3월 24일에 제3차 신헌법안을 공표함과 아울러 4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6회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에 이를 제출하였다.

제6회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는 「러시아연방헌법에 관하여」를 議題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위원회의 제3차신헌법안을 심의하였으나, 여기에서는 4개의 대안이 함께 제출되었다.⁷⁾ 제6회 대회는 1992년 4월 18일 헌법위원회의 제3차헌법안의 기초에 있는 「러시아연방에 있어서 憲法改革의 일반구상」과 최고소비에트가 승인한 「新憲法案의 기본규정」을 승인하였으나, 이 신헌법

7) 4개의 代案은 ①회파 「러시아공산주의자」에 속하는 인민대의원그룹 및 전문가그룹이 작성한 「제2차헌법안」, ②러시아공산주의노동당이 작성하여 1992년 3월에 공표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헌법(기본법)」, ③러시아민주개혁운동의 정치평의회 결정에 의거 세브체크그룹이 작성한 「러시아연방헌법안」, ④헌법위원회위원인 샤프라이그룹이 작성한 「러시아연방헌법안」 등이다. 이 4개의 對案 및 제3차헌법안과의 比較에 관한 것은 大江泰一郎, 「ポスト社會主義の社會と憲法 -ロシア聯邦の憲法草案をめぐって-」, 法の科學 第20號, 1992, 107~119面 參照.

안의 「제16장 연방의 입법권」 및 「제17장 러시아연방대통령, 연방의 집행권」에 관해서는 엘친大統領의 「제안 및 의견」을 고려하여 마무리할 것 그리고 최고소비에트 및 헌법위원회는 신헌법의 완성안을 차기 인민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5. 保革葛藤의 深化와 第4次 憲法案의 否決

한편 제6회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입법권과 집행권의 타협의 산물이며 그 내용이 매우 모호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동 대회에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대결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즉 同大會에서 1991년 11월 엘친에게 부여된 非常大權을 박탈하는데 실패한 최고회의내 보수파들은 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政府組織改編案」을 1992년 5월 25일 제출하게 되자, 엘친행정부는 國民投票를 통한 정면돌파를 검토하는 등 보수파와 개혁파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갔다. 특히 엘친의 經濟改革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계속 악화되자 各政派間 경제개혁의 공과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여지고 각자의 지지세력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혁대립은 10월에 이르러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1992년 11월 4일 최고회의가 엘친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제7차 인민대의원대회의 개최를 1992년 12월 1일로 결정하자 兩者間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12월 1일에 개최된 제7차 인민대의원대회에서 憲法委員會는 제4차 신헌법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동 신헌법안은 임기 5년의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국민투표부의권을 가지며, 最高會議는 총리를 비롯한 각료임명승인권 및 불신임, 파면권을 가지면서 정부를 감독하고

인민대의원대회는 廢止하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이 신헌법안은 행정부와 의회간의 핵심쟁점사항인 각료임명승인 및 해임요구권을 최고회의에 부여하고 大統領任期도 행정부의 6년보다 짧은 5년으로 규정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6. 國民投票의 實施와 議會解散措置

신헌법안이 부결되자 엘친은 신헌법의 基本方向을 묻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구헌법의 유산인 인민대의원대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憲法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신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國民投票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국민투표의 실시여부와 포함내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회지도자는 물론 국민들사이에서도 論爭과 對立이 지속되었으며⁸⁾, 이에 1993년 3월 11일 긴급소집된 제8차 임시인민대의원대회는 엘친의 국민투표실시계획을 無效化決定하기에 이르렀고, 아울러 비상통치에 대한 違憲與否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하였다.⁹⁾ 이에 대항하여 엘친은 1993년 3월 20일 大統領特別統治令의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자¹⁰⁾ 이를 철회하였다.

8) 國民投票와 관련된 논의의 자세한 것은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러시아의 國內政勢分析」, 主要國際問題分析 1993. 3. 17., 14~17面 參照.

9) 자세한 경과는 서울신문 1993년 3월 23일자 解說面 參照.

10)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는 ① 大統領은 1인통치를 선포할 권리가 없다. ② 대통령이 布告令을 발동하면서 의회가 이를 취소할 수 없게 한것은 잘못이다. ③ 大統領은 지방정부의 장에 대한 직할통치를 선포할 수 없으며 그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解任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④ 大統領은 신헌법채택과 최고회의구성을 위한 국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新任投票 호소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國民投票形式을 통해 최고통치권의 소재가 대통령과 최고회의

그러나 옐친은 1993년 4월 25일 국민의사를 묻는 여론조사형식의 國民投票을 실시하겠다고 공포하게 되었다. 이에 다시 소집된 인민대의원대회는 옐친의 대통령직에 대한 신임과 그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찬성여부, 조기 대통령선거 및 총선거의 찬성여부를 묻는 國民投票의 실시에 동의하게 되었고, 국민투표결과 67%의 찬성으로 신임을 획득한 옐친은 조기총선 등의 지지에 힘입어 大統領中心制의 신헌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과도입법기구로 신헌법초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聯邦會議 창설계획을 1993년 8월 12일 발표하였다.

한편 옐친은 1993년 9월 1일 그의 최대의 정적이자 인민대의원대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알렉산데르 루츠코이 副統領과 블라디미르 슈메이코 제1 副總理에 대해 부정부패의 혐의로 그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동년 9월 21일 구소련연방해체후 계속되어 온 二重權力構造에 기인한 헌정위기, 경제개혁지연 및 정치사회적 혼란을 더이상 지속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회의를 해산하고, 신헌법을 12월 12일까지 마련하는 취지의 布告令을 발표하였다. 이에 최고회의는 의회해산포고령은 헌법 제121조6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조항에 의거 憲法裁判所의 위헌결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고 루츠코이 副統領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임명하였다. 그 결과 국가권력의 二重構造가 형성되고 권력장악을 위한 보·혁간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어 결국 유혈사태가 발생, 옐친은 1993년 10월 4일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

중 어디에 있는지 결정할 수 없다. ⑥大統領은 비합법적으로 선언한 국민투표를 통해 신임여부를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이다.

7. 新憲法案의 마련과 國民投票의 實施

엘친의 일방적 승리로 인하여 그는 러시아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政治的 基盤을 확고히 하는 헌법안마련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1993년 10월 30일 大統領에게 총리임명권과 내각전체에 대한 경질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직속의 安全保障會議을 헌법기관으로 격상하고 지방공화국의 주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안을 마련하여 엘친에게 이를 제출하였고,¹¹⁾ 이 헌법위원회의 신헌법안은 엘친에 의하여 修正을 거쳐 1993년 11월 이를 확정하였다. 새로이 마련된 헌법안은 동년 12월 12일의 國民投票에 의하여 유권자 62%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Ⅲ. 新憲法の 特徵과 主要內容

이번에 채택된 新憲法을 제안한 엘친 러시아대통령은 「러시아 新憲法은 민주공화국헌법이며 어떤 個人이나 機關도 절대권력을 가질 권리가 없다. 우리는 스탈린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의 억압적인 질서가 아니라 法에 입각한 秩序를 원하고 있으며 철권통치가 아니라 민주적인 국가권력을 필요로 한다」¹²⁾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엘친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新憲法은 「헌법에 의한 혁명」을 지향하는 것임과 동시에 종래 소비에트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러시아의 反立憲主義的 傳統으로 부터의 탈피를 도모하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多黨制 民主主義, 인권보장, 사유

11) 同 憲法案에 대해서는 本院에서 이를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韓國法制研究院, 「러시아연방헌법(안)」, 外國법제동향분석 93-3, 1993.10. 參照.

12) 韓國日報 1993년 11월 24일자 참조.

재산의 보장, 權力分立主義 등을 채택한 신헌법은 볼셰비키혁명후 70여년 지속된 공산주의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西歐의 民主的 立憲主義에 입각한 헌법체제를 구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어떻든 신헌법의 채택으로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政治의 民主化와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新憲法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의 성패 나아가 러시아의 장래는 이 新憲法의 精神에 얼마나 투철하고 그 실천에 얼마나 성실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새로이 채택된 憲法의 주요특징과 내용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1. 基本的人權에 관한 規定

新憲法은 종래 개인은 소비에트시민으로서 또한 국가행위의 반사적 효과에 의해서 비로소 「自由」확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었던 소비에트적인 市民의 基本的 權利의 논리는 완전히 해소되어,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人權의 論理 즉 「인간·인권 및 자유는 최고의 가치(제2조)」이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다(제17조 2항)」는 원리가 「法治國家(제1조1항)」의 원리와 더불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體制轉換의 방향은 제1편 제1장의 「헌법체제의 기초」 가운데 經濟活動의 자유보장 및 私有財產의 인정(제7조)과 제2장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 가운데 經濟活動의 자유보장(제34조), 財產權行使의 자유보장(제35조), 근로의 권리·직업선택의 자유보장(제37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 新憲法은 언론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제13조·제28조·제29조)를 인정하여 全體主義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도, 無料教育(제

43조)·醫療補助(제41조) 및 住宅(제40조)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원리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人權의 節次的 保障에 관해서는 행정사건을 포함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제47조)등에 부가하여 「인권에 관한 議會全權」제도의 신설이 두드러진다. 다만 조금 특이한 것은 지난 1991년 11월 22일에 채택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선언(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채택)」에 관한 언급은 前文을 포함하여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제55조 3항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는 憲法體制의 기반·道徳性·健康·타인의 권리와 이익·국가방위의 보장·국가안전 등의 수호를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聯邦法律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인권에 관하여 매우 애매한 기준에 의한 法律留保를 의미하는 일반조항이 설치되어 있어서 人權原理에 불철저함을 남기고 있다.

2. 國家權力에 관한 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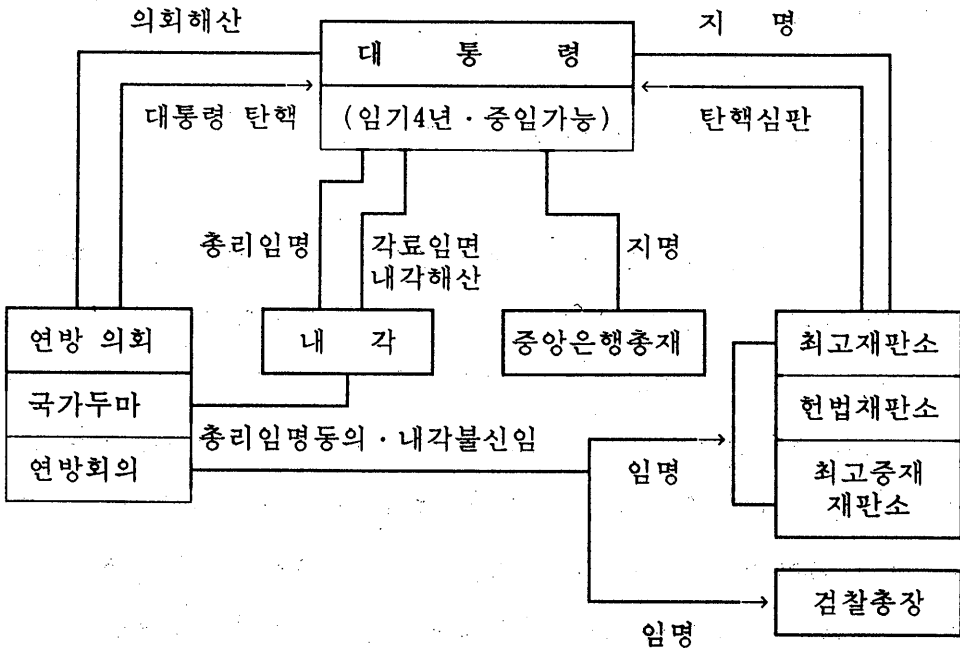
(1) 權力分立原理와 政治的 多元主義의 採擇

국가권력에 관한 규정은 1918년 러시아공화국헌법 이래의 人民主權概念의 원리적 배제와 「직접민주주의적 계급(내지 인민) 國家神話」에 의거한 「인민 권력」의 논리(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는 기본적으로 해소되어 「러시아 연방의 諸民族은 러시아연방내 주권의 主體이며 권력의 유일한 源泉」인 점이 명시되고 있다(제3조1항). 또한 立法權에 관해서는 「러시아연방의회(聯邦會議 및 國家두마)가 대의 및 입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제94조).

그리고 소비에트권력의 이른바 「全權」원리에 대신하여 권력분립의 원리가

채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러시아연방에 있어서 國家權力은 입법·행정·사법의 분립에 기초하여 행사된다. 입법·행정·사법기관은 獨立的이다(제10조)」 및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은 러시아聯邦憲法體制의 원칙과 국가의 대표·집행·권력기관의 일반적 원칙,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러시아연방주체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구성된다(제77조1항)」라는 규정에서 명확히 提示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共産黨機構와 國家機關과의 결합이라는 현상에 관해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원리와 複數政黨制의 원리(제13조3항)」가 확인됨과 아울러 어떠한 임의의 思想도 국가적·의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제13조2항). 이러한 權力分立의 제도적 표현은 다음의 도표와 같이 연방의 회와 대통령의 상호관계에 수렴되고 있다.

〈신헌법에 따른 러시아의 국가기구〉



(2) 大統領의 權限強化

新憲法の 채택을 둘러싸고 가장 실제적으로 논의가 된 쟁점은 大統領 및 정부와 의회의 관계문제이었다. 특히 여기에는 執行權력과 立法權력의 억제와 균형관계라는 일반적인 문제에 더하여 특히 8월 쿠데타이후 형성된 양자의 특수구체적인 對抗關係의 문제가 있었다. 지난 1990년 3월의 선거에서는 소연방과 당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憲法上的의 규정이 포기되었다고는 하나 共產黨은 여전히 견재하였으며, 선거결과 역시 공산당을 위시한 保守派의 우위가 지속되었다. 한편 政府는 쿠데타이후의 空轉으로 부터 가격자유화 등의 충격요법적 改革路線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편성되었으며 나아가 大統領은 空席의 총리직을 사실상 겸임하면서 한시적이기는 하나 急進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권을 의회로 부터 획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봄에는 大統領과 행정기구의 사실상의 일체화와 개혁에 관한 대안이 없는 議會間의 대립으로 부터 정부의 위기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정치적 갈등의 결과 議會를 장악한 大統領은 그동안 改革의 장애가 되었던 의회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고 大統領의 권한을 강화한 「大統領共和制의 憲法」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新헌법에 규정된 大統領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기4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81조).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의 지위에 있으며, 정부의 활동을 「指揮」하고 정부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수반 및 구성원의 사임을 受理 또는 解任하고 러시아연방의 군사 및 대외정책을 지휘하는 등 광범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제80조·제83조). 또한 大統領은 스스로 「大統領令」을 공포하고 하위법령의 성격을 지닌 러시아연방의 전영역에서 이행을 義務化하는 명령을 채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절차는 大統領

에게 「국가반역 또는 중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 국가두마의 발의(대의원 3분의1 이상)에 의해 개시되어 憲法裁判所가 이를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聯邦議會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해서 해임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3조). 新憲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러시아 | 미국 | 프랑스 |
|--------|---|--|--|
| 국군통수권 | 군최고사령관·방위 관련국가기관의 행동 조정권 | 육·해·공군총사령 관 | 3군최고지휘관, 국방 최고평의회 및 국방 위원회 의장 |
| 법률안거부권 | 법안에 반대할 경우 연방의회에 재심요구 연방의회 2/3이상으 로 재가결하면 확정 | 거부권있음, 다만 상 하양원이 2/3이상 재 가결하면 법안은 자 동적으로 확정 | 법안의 재의를 요구 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 각료임명권 | 총리·최고재판소장 지명 해임권 연방의회의 동의 | 각료 및 고위관리, 대 법원판사지명권 상원의 동의 | 총리임명, 총리제청에 의한 각료임명, 헌법 평의회의장임명 |
| 비상대권 | 계엄령·비상사태선 포권, 침략을 받은 경우 선전포고 | 규정없음 | 비상시총리, 양원의 장, 헌법평의회의 자 문에 따라 긴급조치 를 취할 수 있음 |
| 탄핵절차 | 국가두마의 발의, 연방의회의 2/3이상 , 헌법재판소의 결정 | 하원이 탄핵결의, 상 원이 2/3이상 찬성으 로 파면 | 규정없음 |
| 권한대행 | 차순위권한대행자는 총리, 3개월이내에 새대통령선출 | 부통령이 자동승계, 잔여임기의 대통령직 수행 | 상원의장이 승계, 차 순위대행자는 총리, 외무장관 등 |
| 임기 | 4년, 중임 | 4년, 3선금지 | 7년, 다선허용 |
| 조약체결 | 외교교섭을 행하고 국제조약에 서명 | 조약체결, 효력발생 은 상원 2/3이상찬성 필요 | 외교지도, 조약비준 권, 영토변경이 걸린 평화조약은 국회동의 |

(3) 兩院制議會의 採擇

종래 구소련헌법하의 議會는 黨의 결정을 입법화하고 승인하는 극히 한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1988년 고르바초프가 改革政策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의도에서 복수후보 및 비밀투표를 보장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代議員으로 구성되는 「인민대의원대회」와 이것의 상설 상급기관인 「최고회의」를 구성하는 憲法改正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구소련방헌법의 개정에 의해 러시아헌법도 개정되어 러시아人民代議員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며, 最高會議은 이들 인민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共產黨이 불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인민대의원선거에서는 중도·보수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옐친정부의 개혁정책의 추진에 많은 견제를 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人民代議員大會를 중심으로 한 의회중심적인 헌법체계하에서 옐친은 자신의 개혁정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代議制度를 타파하여 행정부 우위적인 대통령제헌법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번에 채택된 新憲法에서 의회의 지위는 매우 약화되고 있다.

우선 新議會는 옐친대통령이 해체한 구최고회의, 인민대의원대회에 대신하여 聯邦會議과 국가두마로 구성되고 있다. 上院格인 「연방회의」는 임명이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데 89개의 聯邦構成體로 부터 각 2인의 의원이 선출되고 대통령해임의 결정·사법기관간부의 임면·법안의 승인·비상사태나 전시체제도입의 승인권을 가지며, 특히 外交政策部門에 특별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상원과 유사하다. 그러나 聯邦會議은 러시아어의 「소비에트」의 본래의 의미대로 助言機關에 불과하다. 下院格인 「國家두마」¹³⁾는 소선거구제로 각선거구로 부터 1인씩 선출되는 225인과 정당·단

13) 「두마」라는 명칭은 러시아帝政時代末期에 설립된 신분제의회에 유래한

체의 득표율에 따라 議席이 배분되는 전국구비례대표의원 225인으로 구성된다. 國家두마는 법안의 심의·채택 등 실질적인 입법권한을 가지며, 대통령 해임의 발의·중앙은행총재의 임면·총리인사예의 동의·내각불신임결의·연방예산의 확정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美國의 下院보다는 권한이 약하다.

〈러시아의회제도의 변천사〉

| 시 대 | 의 회 | 설립년월 | 개 요 |
|----------------------------|------------------------|----------------------|---|
| 러시아 제국 | 국가평의회 | 1811.1 (~1917.2) | 황제칙선의 입법자문기관 |
| | 두 마 | 1906.4 (~1917.10) | 전제로 부터 입헌군주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국가평의회(상원)에 대한 하원으로서 발족한 신분제의회 |
| 혁 명 기 | 헌법제정의회 | 1918.1 | 2월혁명후 임시정부하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했으나, 개회다음날 볼셰비키에 의해 강제해산됨 |
| | 소비에트 (소연방최고회의) | 1922.12. | 센트페테르부르크등에서 결성된 공장노동자의 대표자회의를 기원으로 하며 이어 전국각지에서 노동자, 병사, 농민의 소비에트가 결정됨. 10월혁명으로 전러시아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 소연방이 성립하고 헌법상은 최고회의가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었으나 사실상으로는 공산당이 결정한 방침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되었다. |
| 소 비 에 트 연방 | 소련인민대의원대회 · 소연방최고회의 | 1989.3 (~1991.12) | 고르바초프정권하에 반자유선거로 인민대의원을 선출하고, 나아가 대의원이 상설입법기관으로서 최고회의를 선출. |

다. 1905년 당시의 수도 센트페테르부르크에서 講願書를 휴대하여 궁전으로 향하던 노동자·농민의 집단에게 군대가 발포, 수백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피의 일요일사건」을 계기로 市民의 요구를 받아들여 니콜라이 2세가 설치하였다.

| 시 대 | 의 회 | 설립년월 | 개 요 |
|-------------------|-----------------------|-----------------------|---|
| 러 시 아 연방 |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 · 러시아최고회의 | 1990. 4 (~1993. 9) | 소련을 구성하는 1공화국(러시아)의 의회가 소련해체로 국회로 승격 1991년 8월 쿠데타에서는 옐친대통령을 지지하였으나, 그 후 경제개혁노선을 둘러싸고 대립, 강제해산됨 |
| | 연방의회 (연방회의 · 국가두마) | 1993. 12. | 러시아 사상 최초의 정당제선거 |

(4)기 타

新憲法은 종래의 소련의 전통적인 中央執權化를 타파하고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중앙집권화는 러시아聯邦의 붕괴를 초래하고 市場經濟의 정착에도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헌법 제12조에서는 「러시아연방에서의 地方自治는 인정 · 보장한다. 地方自治團體는 그의 권한내에서 자주적이다. 지방자치기관은 국가권력기관체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제8장에 「地方自治」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司法權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헌법 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를 각각 설치하여 각 재판관은 聯邦大統領의 제청으로 聯邦會議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憲法裁判所는 각종 규범의 합헌성통제, 법률고문활동, 권한쟁의심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 록〉

러시아연방헌법

러시아연방의 다민족인 우리는,
자신의 국토에서 결합된 공동운명체로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 및 시민의 평화와 화합을 확인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룩된 국가적 단결을 유지하고,
권리평등과 자결의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조들
을 기억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체제를 부흥시키고, 이의 민주적 기반의 견고함을 확인하고, 러시아
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공동체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면서,
러시아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제 1 편

제 1 장 헌법체제의 기초

- 제1조 1.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제지배 통치형태를 가지는 민주주의적 연방법
치국가이다.
2.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인간·인권·자유는 최상의 가치를 가진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 제3조
1.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내 주권의 주체이며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다.
 2. 국민은 직접 또는 국가권력기관과 지방자치기관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3. 국민투표와 자유로운 선거는 국민의 직접적인 최상의 권력행사이다.
 4. 러시아연방내에서는 그 누구도 월권행위를 할 수 없다. 권리의 박탈·월권행위는 연방법률에 따라 제소된다.

- 제4조
1. 러시아연방의 주권은 전영토에 미친다.
 2. 러시아연방헌법과 연방법률은 러시아연방의 전영토내에서 상위법이다.
 3.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영토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 제5조
1.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의 동일한 주체인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로 구성한다.
 2. 공화국(국가)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가진다. 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는 자체의 법률과 법규를 가진다.
 3. 러시아연방의 연방기구는 국가의 보전·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러시아연방 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의 권력기관간의 관할 및 권한의 한계·러시아연방국민의 평등과 자결에 기초한다.
 4. 러시아연방의 모든 주체기관은 연방권력기관과의 관계에서 상호 동등하다.

- 제6조
1. 러시아연방의 시민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평등하게 연방법률에 의거 획득·정지되며, 획득의 이유에 관계없이 유일하고 평등하다.
 2. 러시아연방의 개별시민은 자신의 영토내에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또한 러시아연방의 헌법에 명시된 동일한 의무를 진다.
 3.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자신의 시민권을 박탈 또는 변경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7조
1. 사회적 국가인 러시아연방의 정책은 인간의 가치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 주는 여건 조성에 기초한다.

2. 러시아연방은 사람들의 근로·건강을 보호하며, 최소한의 노동임금을 확보하고, 가족·부모·유아·장애자와 장년층의 시민에게 국가의 지원을 보장하며, 사회봉사체제를 발전하고, 국가의 연금·보조금 및 기타 사회보장을 확립한다.

- 제8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경제구역의 통합·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서비스와 재정 금융·경쟁력·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국가·자치단체의 재산과 기타 형태의 재산을 인정·보호한다.

- 제9조
1. 러시아연방에서 토지와 천연자원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보호한다.
 2. 토지와 천연자원은 개인·국가·자치단체의 재산이며, 기타 형태의 재산이다.

- 제10조
- 러시아연방에서 국가권력은 입법·행정·사법의 분립에 기초하여 행사한다. 입법·행정·사법 기관은 독립적이다.

- 제11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러시아연방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국가두마),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연방사법부가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2. 러시아연방주체는 그에 의해 조직되는 국가권력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3. 러시아연방의 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의 권력기관간의 관할 및 권한의 한계는 이 헌법·연방조약 및 관할 및 권한의 제한에 관한 다른 조약에 의해 수립한다.

- 제12조
- 러시아연방에서 지방자치는 인정·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권한내에서 자주적이다. 지방자치기관은 국가권력기관 체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사상의 다양성을 허용한다.
 2. 어떠한 임의의 사상도 국가적·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3. 러시아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을 허용한다.

4. 사회단체는 법앞에 평등하다.
5. 그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헌법체제의 기반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러시아연방의 순수성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의 파괴, 무장세력의 창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야기시키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한다.

- 제14조 1. 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다. 어떠한 임의의 종교도 국가적·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2. 종교단체는 국가와 별개이며, 법앞에 평등하다.

- 제15조 1. 러시아연방의 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2. 국가권력기관·지방자치기관·관리·시민과 그의 단체는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법률은 정식의 공포가 행해져야 한다.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편적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의무를 침해하는 임의의 법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보편화된 원칙·국제법규범·국제조약은 러시아연방의 법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임의의 규정이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법보다 국제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제16조 1. 헌법의 이 장의 규정은 러시아연방헌법체제의 근간이며, 이 헌법의 확정에 따라 어떤 규정으로도 달리 변경할 수 없다.
2. 이 헌법의 그 어떠한 조항도 러시아연방헌법체제의 근간에 위배될 수 없다.

제 2 장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

- 제17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보편화된 원칙과 국제법규범에 따르며, 또한 이 헌법에

의거하여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를 인정·보장한다.

2. 인간의 기본적 권리·자유는 태어날 때 부터 개인에게 부여된다.
3.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직접적인 행위이다. 이것이 법률의 의미·내용·적용 및 입법·집행부와 지방자치의 활동을 규정한다.

- 제19조
1. 모든사람은 법률과 재판 앞에 평등하다.
 2. 국가는 성별·인종·언어·출신·재산과 지위·거주지·종교관계·신념·사회단체소속 및 기타 여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언어적·종교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이의 행사에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2. 사형은 앞으로 폐지될 때까지 재판에 의한 사실심리에 있어 피고에게 주어진 생명의 권리에 반하는 중죄에 한해서만 형벌의 집행으로서 연방법률에 의해서 확정한다.

- 제21조
1. 인격의 가치는 국가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떠한 사유로도 이 가치를 저하시킬 수 없다.
 2. 누구든지 고문·강압·처벌 기타 가혹행위 및 모욕으로 인격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자발적인 동의없이 의학·학술 기타 실험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권리와 개인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2. 체포·구금 및 감금은 사법적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사법적 결정이 있기전까지 개인은 48시간이상 구류되지 아니한다.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사생활·개인과 가족의 비밀·자신의 숭고한 명예와 성명의 보

호에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서신·전화통화·우편·전신 및 기타 통신의 비밀권을 가진다. 이 권리의 제한은 사법적 결정에 의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제24조 1.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존 이용과 전파는 그의 동의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특별히 법률로서 규정되지 않는 한 국가의 권력기관·지방자치기관·그 기관의 관리는 그 권리와 자유를 직접 훼손시키는 문서와 자료에 대한 접근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주거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누구든지 연방법률 또는 사법적 결정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할 권리가 없다.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민족적 소속을 결정·지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이 결정·지정을 강요할 수 없다.
2. 모든 사람은 모국어 사용권 및 교재·교육·창작을 위하여 자유로운 언어사용권을 가진다.

- 제27조 1. 러시아연방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 및 거주 장소를 자유로이 이전·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러시아연방의 영토밖으로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자유로이 러시아연방으로 귀국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개인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임의의 종교를 신봉할 권리,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을 권리, 종교적 신념·기타 신념을 선택·전파·소유하거나 그 신념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양심·종교의 자유가 보장 된다.

-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2. 사회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증오 또는 반목을 야기하는 선전·선동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또는 언어 등의 우월성의 선전은 금지한다.

3. 누구든지 자신의 사상·신념의 표현 또는 이의 거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모든 사람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입수·수취·전달·보급할 권리를 가진다.
5. 대중적 정보의 자유는 보장한다. 검열은 금지한다.

- 제30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결권을 포함하여 단체연합권을 가진다. 이들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2. 누구든지 어떠한 단체의 가입 또는 그 단체의 계속적인 소속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평화적인 비폭력의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대중집회·시위·행진·피켓시위 등을 개최할 권리를 가진다.

- 제32조 1.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국가적인 업무의 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국가기관·지방자치기관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재판에 의해 무능력자로 인정된 시민 또는 재판의 판결에 의해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서 부양되는 시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5.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국가기관·지방자치기관에 사적인 호소, 개인적·집단적인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34조 1. 모든 사람은 기업활동과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제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재산을 자유로이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2. 독점 및 비양심적인 경쟁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35조 1. 사유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한다.
2. 모든 사람은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며,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영위·활용·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3. 누구든지 재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적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적인 수용은 사전보상 또는 동등한 가치의 보상조건하에서만 실시된다.

제36조 1. 시민 및 시민단체는 사적 재산으로서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연환경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기타 천연자원의 영유·활용·처분은 소유주가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3. 토지의 이용조건·방법은 연방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제37조 1. 노동은 자유이다. 모든 사람은 근로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자유로이 발휘할 권리, 직업의 종류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2. 강제적인 노동은 금지한다.
3. 모든 사람은 안전·위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조건, 어떠한 차별대우없는 노동에 대한 보수, 연방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보수 또는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파업의 권리를 포함하여 연방법으로 규정된 문제해결을 위한 합법적 방법을 사용한 개인·집단적 노동쟁의의 권리는 인정된다.
5. 모든 사람은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연방법에 정해진 근로시간·휴일·경축일·유상연가를 보장한다.

제38조 1. 여성·어린이·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어린이 보호·양육은 부모의 소중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3. 18세에 달한 근로능력이 있는 청소년은 근로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제39조 1. 질병·노동력상실·부양자를 상실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린이양육을 위하여 연령에 따른 사회구호를 보장한다.

2. 국가연금·사회적 보조금은 법률로서 규정한다.
3. 자발적인 사회보험·자선사업이나 자선단체의 설립은 권장한다.

- 제40조 1. 모든 사람은 주거의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근거없이 주거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국가기관·지방자치기관은 주택건설을 장려하며, 주거의 권리의 성취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3.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법률로서 지정한 저소득 시민에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지방자치·기타 주택기금에서 적법하게 무료 또는 일정금액을 제공한다.

- 제41조 1. 모든 사람은 건강보호·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지방자치 보건시설에서의 치료는 관련예산·보험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무상제공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주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연방계획을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사적 보건기구의 발전에 관한 대책을 채택하며, 인간의 건강증진, 체육·스포츠발전 및 전염병예방활동을 장려한다.
 3.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위해를 조장하는 요소와 상황이 관리에 의하여 은폐되는 경우 연방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42조 모든 사람은 훌륭한 자연환경과 그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 법률위반으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에 끼친 피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3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국가·지방자치 교육시설과 취학전의 교육·보통교육 및 기업에서의 중등직업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 모든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시설과 기업에서 경쟁에 입각하여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다.
 4. 초등의 보통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은 어린이로 하여금 초등의 보통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5. 러시아연방은 연방국가교육 기준안을 수립하고, 각종형태의 교육과 독학을 지원한다.

- 제44조 1. 모든 사람은 문학·예술·과학·기술 기타 형태의 창작 및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2.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의 참여, 문화시설의 이용 및 문화재를 접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45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는 국가적으로 보호한다.

2. 모든 사람은 법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

제46조 1.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권리와 자유의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2. 국가기관·지방자치기관·사회단체기관·관리 등의 결정과 행위는 재판에 공소할 수 있다.
3. 국내의 법적 권리보호를 상실하는 경우 모든 사람은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인권 및 자유관련 국제기관에 이를 호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47조 1. 누구든지 법률에 의한 재판에 있어서 법정과 재판에서 사실심리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연방법률에서 규정된 경우 범죄행위를 범한 피고인은 배심원의 참여하에 재판에 의해 그 사실을 심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48조 1. 모든 사람은 소정의 법률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법률상의 구제는 무료로 제공된다.

2. 구금된 개별 피의자, 범죄행위를 범한 피고인은 구류·구금·기소된 때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9조 1. 범죄행위를 범한 개개의 피고인은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의 유죄가 증명되지 아니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법관의 선고가 있기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2. 피고인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3. 범죄에 대한 의심스러운 상황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50조 1. 누구든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재판진행에서 연방법률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활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는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고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특사·형의 감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51조 1. 누구든지 자신·배우자·법률로서 규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2. 증거의 증명제공의무로 부터의 면제되는 임의의 경우는 법률로서 정할 수 있다.

제52조 범죄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재판의 이용과 피해로 야기된 보상을 보장한다.

제53조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과 관리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54조 1. 책임을 규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행위시에 위법이 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 사실이 성립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적용한다.

- 제55조 1. 러시아연방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된 인간·개인의 권리·자유를 부정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러시아연방내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를 취소 또는 축소하는 법률은 공포할 수 없다.
 3.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는 헌법체제의 기반·도덕성·건강·타인의 권리 이익·국가방위의 보장·국가안전 등의 수호를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연방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 1. 연방헌법에 따른 시민의 안전보장과 헌법체제의 수호를 위한 비상사태하에서의 권리·자유 부분적 제한은 그 효력의 범위·기간을 명시하여야만 가능하다.

2. 상황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와 일부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는 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러시아연방헌법 제20조·제21조·제23조(일부)·제24조·제28조·제34조(일부)·제40조(일부)·제46조 부터 제54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제57조 모든 사람은 법률로서 규정된 조세 및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58조 모든 사람은 자연과 주변자원을 보호하고, 풍요로운 천연자원을 소중하게 여겨야한다.

- 제59조
1. 조국의 수호는 러시아연방시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2.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가 있다.
 3.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병역의무의 수행이 그의 신념이나 신앙에 모순되는 경우 또는 연방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문관직을 선택하여 그 의무수행을 대신할 권리가 있다.

제60조 러시아연방 시민은 18세부터 완전히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제61조
1.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러시아연방 국경밖으로 추방되거나 타국으로 인도되지 아니한다.
 2. 러시아연방은 자국시민을 보호하며 또한 외국인의 보호를 보장한다.

- 제62조
1.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러시아연방의 연방법률 또는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국제조약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러시아연방시민의 외국시민권의 공유로 인하여 러시아연방의 연방법에 규정한 그의 권리·자유는 축소되지 아니하며 러시아시민권으로 부터 파생하는 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한다.
 3. 외국시민과 무국적자는 러시아연방에서 러시아연방의 연방법률·국제조약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러시아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수행한다.

- 제63조 1. 러시아연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규범에 따라 외국시민과 무국적자에게 정치적 망명처를 제공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정치적 신념과 러시아연방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무행위)로 인하여 박해를 당한 인사의 타국으로의 인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타국에서 범죄사실의 성립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인도 또는 형기를 마치기 위한 수형자의 이송은 러시아연방의 연방법률·국제조약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제64조 제 2장의 규정은 러시아연방에서 인격의 법적지위에 대한 기본규정이며 이는 이 헌법의 확정으로 달리 변경할 수 없다.

제 3 장 연방기구

제65조 1. 러시아연방의 다음과 같은 주체가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가 된다.

아드게야(아드게야)공화국, 알타이공화국,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 브라지야공화국, 다게스탄공화국, 인구쉬공화국, 까바르지나-발카르공화국, 칼미키야-할므그탄츠크공화국, 까라차예보공화국, 체르케공화국, 칼레리야공화국, 꼬미공화국, 마리엘공화국, 몰도비아공화국, 사하(야쿠지야)공화국, 북오세티야공화국, 따타르스탄(따타르스탄)공화국, 두바공화국, 우드무르트공화국, 하카시야공화국, 체첸공화국, 추바스-차비시공화국 ;

알타이지방, 그라스노다르지방, 그라스노야르지방, 연해지방, 스파프로뽀지방, 하바로프지방 ;

아므르주, 아르한겔주, 아스뜨라한주, 벨고르드주, 브란주, 브라지미르주, 볼고르가드주, 볼로그드주, 보르네즈주, 이바노프주, 이르끄뜨주, 칼라닌그란드주, 칼루즈주, 캄차뜨주, 께메로프주, 끼로프주, 까스뜨롭주, 꾸르간주, 꾸르주, 레닌그라드주, 리베쯔카야주, 마가단주, 모스꼬프주, 무르만주, 니제고르드주, 노보고르드주, 노보시비르주, 옴스끄주, 오렌부르크주,

오르토프주, 벤젠주, 빼름주, 뷔스꼬프주, 로스토프주, 라잔주, 사미르주, 사라토프주, 사하란주, 스페르드로프주, 스몰렌주, 탐보프주, 트베르주, 톨주, 투르주, 쭈멘주, 우라노프주, 체라빈주, 치짚주, 야로스라프주 ;

모스크바, 쌍뜨-삐쎬르부르그 연방직할시 ;

유럽의 자치주 ;

아긴부라뜨자치관구, 꼬미-뎀르마즈크자치관구, 꼬랴끄자치관구, 네네즈끄자치관구, 타이르트(돌가노-네네즈끄)자치관구, 우스뜨-오르진브라뜨자치관구, 한뜨-만시야끄자치관구, 쉐꼬뜨자치관구, 에벤끼자치관구, 야마로-네네즈끄자치관구

2. 러시아연방으로의 수용, 새로운 주체로의 편입은 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 제66조
1. 모든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헌법 및 공화국 헌법에 따라 규정한다.
 2. 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의 지위는 러시아연방헌법과 러시아연방주체의 입법기관(의회)에 의해 채택되는 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의 법규로 정한다.
 3. 자치주·자치관구에 관한 연방법은 자치주·자치관구의 입법 및 집행기관의 제의에 따라 채택될 수 있다.
 4. 지방·주의 구성주체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치관구의 상호관계는 연방법률과 자치관구국가권력기관간의 조약에 따라 조정하며, 지방·주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계도 위와 동일하다.
 5. 러시아연방주체의 지위는 연방헌법에 따라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주체간의 상호협약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67조
1. 러시아연방의 영토는 구성주체의 영토·내해·영해·영공을 포함한다.
 2. 러시아연방은 주권을 향유하며, 대륙붕 및 연방법과 국제규범에 규정된 관행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특별경제지역에 사법권을 행사한다.
 3. 러시아연방주체간의 경계는 그들의 상호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제68조 1. 러시아어는 전영토내에서 러시아연방의 국어로 한다.
2. 공화국은 자국의 언어를 지정할 권리가 있다.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기관, 공화국의 국가기관에서는 러시아연방의 국어와 함께 공화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3. 러시아연방은 모든 시민에게 모국어보존 및 그 연구·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69조 러시아연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국제법규범·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에 따라 토착소수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 제70조 1. 러시아연방의 국기·국장·국가, 그 상징 및 공식적 사용절차는 연방헌법적 법률로 정한다.
2. 러시아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이다.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71조 러시아연방의 관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연방법의 채택·개정 및 이의 준수를 위한 통제
2. 러시아연방의 연방기구 및 영토
3.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 조정 및 보호, 러시아연방내 시민권, 소수민족의 권리조정 및 보호
4. 입법·집행·사법 연방권력기관의 체계확립·그들 기관의 규칙 및 활동·국가권력 연방기관의 형성
5. 연방국가재산 및 그 관리
6. 연방정책의 원칙확립 및 러시아 연방의 국가·경제·생태계·사회·문화·민족발전 분야의 연방계획
7. 단일시장의 법적원칙확립, 재정·통화·신용대출·관세의 조정·화폐발행·가격정책의 원칙·연방은행을 포함한 연방경제 업무
8. 연방예산, 연방조세·세금, 지역개발 연방기금
9. 연방에너지체계·원자력·핵분열재, 연방운수·교통수단·정보·통신, 우주사업
10.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국제관계,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전쟁·평화문제

11.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관계사업
12. 방위·안보, 방위산업, 무기·탄약·군사기술·기타 군수물자의 판매·구매 규칙결정, 유독물질·마약제조 및 이의 사용규칙
13. 러시아연방의 국경·영해·항공운수·특수경제지역·대륙붕의 지위 및 보호
14. 재판제도, 검찰, 형사·형사소송·형집행 법률제정, 특사·사면, 민사·민사소송·중재소송법, 지적 소유권의 법률조정
15. 연방저축법
16. 기상업무, 규격, 도량형표준, 미터법 및 시간계산, 측지·제도법, 지리의 명칭, 공식통계·부기산출
17. 러시아연방의 국가포상·명예칭호
18. 연방국가 업무

제72조 1.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관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러시아연방헌법과 연방법 및 공화국의 헌법·법률, 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의 법규·규정 및 기타 표준적 법률행위의 일치보장
2.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보호, 소수민족의 권리보호, 합법성·법률제도·사회안전보장, 경제지역규칙
3. 영토문제, 토지·지하자원·수자원·기타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
4. 국가재산의 분계확정
5. 자연계 활용, 주변환경 보호, 생태계보전 보장, 특별자연보호구역, 역사문화적 기념비 보호
6. 양육·교육·과학·문화·체육·스포츠 등의 전반적 문제
7. 보건문제의 조정, 부모·어린이보호, 사회안전을 포함한 사회보호
8. 참변·불가항력의 재해·전염병등의 퇴치에 관한 대책수립 및 그 후유증 해소
9. 러시아연방의 과세·세금의 일반적 원칙 수립
10. 행정·행정소송·노동·주택·토지·수자원·산림 등의 법률·지하자원·주변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11. 사법·법률보호기관의 간부, 변호인단·공증기관
12. 고대거주지 주변 및 소수인종의 전통 생활양식 보호
13. 국가권력기관과 지방자치기관의 조직체계의 전반적 원칙 수립
14. 러시아연방주체의 국제·대외경제관계 조정·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수행

2. 본조의 규정은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구·자치관구에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73조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관할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연방의 관할 및 러시아연방의 권한행사에 관련한 사항이외에 러시아연방의 주체는 완전한 국가권력을 향유한다.

- 제74조 1. 관세의 한도·각종세금·세금징수의 결정 및 자유로운 상품유통·서비스·재정금융등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러시아연방의 영토에서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상품유통과 서비스의 제한은 안전보장, 시민의 생활·건강보호, 자연계·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법률로서 실시할 수 있다.

- 제75조 1. 러시아연방의 통화단위는 루블이다. 화폐발행은 러시아연방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된다. 러시아연방에서는 기타 화폐의 도입과 발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루블의 가치보호 및 안정은 국가의 다른권력과 관계없이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기본임무이다.
 3. 러시아연방에서 연방예산으로 징수되는 조세의 방식, 과세의 전반적인 원칙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수립한다.
 4. 국채는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행하며,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 제76조 1. 러시아연방의 관할대상에 관해서는 러시아연방 전영토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연방헌법·연방법이 적용된다.
2.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관할대상에 관해서는 연방법 및 이에 의거하여 채택된 법률, 러시아연방 주체의 기타 합법적 법규가 발표된다.

3. 연방법은 연방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4. 러시아연방의 관할,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주체의 공동관할대상을 제외한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는 법령과 기타 합법적 법규의 채택을 포함하여 고유한 법률조정을 시행한다.
5. 러시아연방주체의 법률·법규는 본조 제1항·제2항에 의거하여 채택된 연방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러시아연방에서 연방법과 기타 법규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연방법의 효력이 우선한다.
6. 연방법과 본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발포되는 러시아연방주체의 합법적 법규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러시아연방주체의 합법적법규의 효력이 우선한다.

- 제77조 1.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은 러시아연방헌법 체제의 원칙과 국가의 대표·집행·권력기관의 일반적원칙,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러시아연방주체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2. 러시아연방의 관할, 러시아연방·러시아연방주체의 공동관할대상과 관련한 러시아연방 권한의 범위내에서 연방집행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의 집행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에서 통일된 집행권력체제를 형성한다.

- 제78조 1. 자신의 권한행사를 위하여 연방집행권력기관은 그의 관할지역기관을 설치하고 적합한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연방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방집행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주체의 집행권력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권한일부를 수행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러시아연방주체의 집행권력기관은 연방집행권력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권한일부를 수행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러시아연방대통령·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연방 전영토에 대하여 러시아연방의 헌법에 따라 연방국가권력의 권한행사를 보장한다.

제79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에 제한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러시아연방의 헌법 체제의 근간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은 정부간 연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제 조약에 따라 자신의 권한 일부를 그에 양도할 수 있다.

제 4 장 러시아연방의 대통령

- 제80조 1. 러시아연방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다.
2.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를 보증인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독립·국가적 일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국가권력기관의 원활한 기능·상호작용을 보장한다.
 3.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4. 러시아연방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국내 및 국제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 제81조 1.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시민에 의하여 직접·평등·비밀선거에 입각하여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자는 러시아연방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러시아연방의 35세이상의 시민이다.
 3. 동일인이 2회이상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다.
 4.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 제82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권한 수행시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자유를 존중·보호하며, 러시아 연방의 헌법을 준수·수호하고, 국가의 주권·독립·안정·통일성을 옹호하며, 국민들에게 충실히 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2. 선서는 연방회의 의원·국가두마의 대의원,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등의 참여하에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행한다.

제83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국가두마의 동의하에 러시아연방정부의 총리를 임명한다.
2. 러시아연방 정부회의를 주재할 권리를 가진다.
3. 러시아연방 정부의 해산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다.
4.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총재직 임명을 위한 후보자를 국가두마에 제출하며,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총재해임에 관한 문제를 국가두마에 제기한다.
5. 러시아연방 정부 총리의 재청으로 러시아연방 정부의 부총리 및 연방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6.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중재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위한 후보자 또한 러시아연방 검찰총장 후보자를 연방회의에 재의한다.
 7. 연방법에 의하여 지위가 결정되는 연방안보회의를 구성하고 주재한다.
 8. 러시아연방의 군사장령을 승인한다.
 9.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행정기관을 구성한다.
 10.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권한대표자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11. 러시아연방 군부의 최고지휘관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12. 연방회의의 해당위원회 또는 해당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외국과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고위외교관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제84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두마의 선거를 결정한다.
2.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선례와 절차에 따라 국가두마를 해산한다.
3. 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결정한다.
4. 국가두마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5. 연방법에 서명·공포한다.
6. 국내정세, 국가의 대내외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두교서를 연방회의에 송부한다.

- 제85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 또는 러시아연방 주체의 국가권력기관의 의견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합의해결을 위하여 해당재판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은 그와 같은 행위가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의무에 배치되거나, 인간과 시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재판소에서 그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러시아 연방주체 집행권력기관의 법률행위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제86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을 지도한다.
2.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을 조인한다.
3. 비준서에 서명한다.
4. 외교대표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87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사령관이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 러시아연방의 전영토나 그 일부 지역에 전시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보한다.
3. 전시사태의 제반조건은 연방헌법적 법률로 규정한다.

제88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비상사태 발생시 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전영토나 그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보한다.

제89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러시아연방의 시민권 및 정치적망명 문제를 결정한다.
2. 러시아연방의 국가포상을 수여하고 러시아연방의 명예칭호, 최고군사·최고특별칭호를 부여한다.
3. 사면을 행한다.

제90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명령과 포고를 발포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는 러시아연방의 전영토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는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1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불가침권을 가진다.

제92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선서를 한 때부터 권한행사에 착수하며, 러시아연방의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한 선서순간부터 전임 대통령은 임기만료로 권한행

사가 중지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못하거나 파면되는 경우에, 권한 행사를 임기전에 중지한다. 이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는 권한 행사가 기한전에 중지된 시점으로 부터 3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총리가 그 직무를 임시로 수행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직무대리자는 국가두마를 해산하거나 국민투표를 결정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러시아연방 헌법의 수정·개정안 제출권이 없다.

- 제93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두마에 의한 국가반역 또는 중죄를 범하였다는 제기에 의해 기소되어,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행위에 범죄사실이 있음이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확인되고,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가 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기소제기절차가 준수되었다는 결정에 의해서 연방회의에 의하여 탄핵될 수 있다.
2. 기소제기에 대한 국가두마의 결정과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연방회의의 결정은 국가두마대의원 1/3이상의 발의에 따라 국가두마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결정과 각원에서 전체의원수의 2/3이상의 결정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연방회의의 결정은 국가두마가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후 3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연방회의의 결정이 채택되지 아니하면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거부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연방의회

제94조 러시아연방의 의회 -연방의회는 대의 및 입법 기관이다.

- 제95조 1. 연방의회는 양원인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로 구성한다.
2.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의 1개의 주체로 부터 2인의 대표, 국가권력 대의기관 1인·집행기관 1인으로 구성한다.

3. 국가두마는 45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96조 1. 국가두마는 4년을 임기로 선출된다.

2. 연방회의의 구성·국가두마 대의원의 선출절차는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제97조 1. 국가두마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21세에 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러시아연방 시민이다.

2. 연방회의의원과 국가두마대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국가두마의 대의원은 국가의 다른 권력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국가두마의 대의원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상설적으로 활동한다. 국가두마의 대의원은 국가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교사·과학 기타 창조적 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98조 1. 연방회의의원과 국가두마의 대의원은 그의 임기동안 불가침권을 가진다.

그들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구금·수색을 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문을 당하지 아니한다.

2. 불가침권을 박탈하는 문제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제청으로 연방회의의 해당 의회에서 결정한다.

제99조 1. 연방회의는 상설활동기관이다.

2. 국가두마는 선거된 후 30일이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위하여 소집된다.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은 이 기간전에 국가두마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국가두마의 최초 회의는 최고령 대의원이 주재한다.

4. 새로운 임기의 국가두마활동이 개시된 때로부터 전임기의 국가두마의 권한은 중지된다.

제100조 1.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의 회의는 별개로 열린다.

2.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의 회의는 공개한다. 의사규칙에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3. 의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교서,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의 교서, 외국지도자의 연설을 청취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집회할 수 있다.

- 제101조 1. 연방회의는 그 구성원 중에서 연방회의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국가두마는 그의 구성원 중에서 국가두마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2. 연방회의 의장과 부의장, 국가두마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의 내부질서를 관장한다.
 3.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각기 소관사항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4.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는 각기 규칙을 제정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내규사항을 결정한다.
 5. 연방예산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는 회계원을 조직하며, 그 구성·활동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1. 다음 사항은 연방회의가 관장한다.

1. 러시아연방주체간의 경계선 변경의 승인
2. 전시상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대통령 포고의 승인
3.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대통령 포고의 승인
4.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러시아연방 군사력사용여부에 관한 문제 결정
5. 러시아연방대통령 선거의 지정
6.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탄핵
7.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8.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임명·해임
9. 회계원 부원장·회계원 구성원 반수의 임명·해임
2. 연방회의는 러시아 연방헌법의 관할사항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다.
3. 연방회의의 법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연방회의의원 재적 과반수로 채택한다.

제103조 1. 다음 사항은 국가두마가 관장한다.

1. 러시아연방정부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
2. 러시아연방정부 신임문제의 결정
3.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해임
4. 회계원 원장·회계원 구성원 반수의 임명·해임
5. 연방헌법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 권한대표의 임명·해임

6. 사면의 논의

7. 러시아연방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소제기

2. 국가두마는 러시아 연방헌법의 관할사항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다.
3. 국가두마의 법령은 러시아 연방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가두마대의원 재적 과반수로 채택한다.

- 제104조 1. 법률안 발의권은 러시아연방대통령, 연방회의, 연방회의의원, 국가두마대 의원,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연방 주체의 입법(대의)기관에게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러시아연방 최고중재 재판소도 그의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안 발의권을 가진다.
2. 법률안은 국가두마에 제출된다.
 3. 조세의 제정·세금의 폐지, 면세·국채발행, 연방예산으로 지출하는 기타 예상지출 법률안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 제105조 1. 연방법률은 국가두마가 채택한다.
2. 연방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국가두마대의원 재적 과반수로 채택한다.
 3. 국가두마가 채택한 연방법률은 5일 이내에 연방회의의 심의를 위해 이송된다.
 4. 연방법률은 연방회의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 또는 14일 이내에 연방회의에서 심의되지 않는 경우에 연방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방법률이 연방회의에서 부결된 경우 양원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방법률은 국가두마에 재의를 위하여 회부한다.
 5. 연방회의의 의결에 대해 국가두마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연방법률은 재의결에서 국가두마대의원 재적총수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106조 국가두마가 채택한 다음 문제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된다.

1. 연방예산
2. 연방 조세·세금
3. 재정·외화·신용·관세의 조정·화폐 발행

4.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비준·폐기
5. 러시아연방 국경의 지위·수비
6. 선전·강화

- 제107조 1. 채택된 연방법률은 서명·공포를 위하여 5일이내에 러시아연방대통령에게 이송된다.
2. 러시아연방대통령은 14일이내에 연방법률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3.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연방법률이 이송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두마·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법률을 재의한다. 재의에 의해 연방법률이 연방회의의원·국가두마대의원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7일이내에 이에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 제108조 1. 연방헌법적 법률은 러시아연방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채택된다.
2. 연방헌법적 법률은 연방회의의원 재적 3/4이상과 국가두마 대의원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 채택된 것으로 본다. 채택된 연방헌법적 법률은 14일이내에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 제109조 1.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헌법 제111조·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러시아연방대통령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2. 국가두마가 해산된 경우에 러시아연방대통령은 해산된 때로부터 4월 이내에 새로 선출되는 국가두마의 소집을 위하여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3.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후 1년이내에 해산되지 아니한다.
 4.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제기한 때로부터 연방회의의결의가 채택되기 전까지 해산되지 아니한다.
 5.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전영토에서 전시상태·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한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6월전에는 해산되지 아니한다.

제 6 장 러시아연방정부

- 제110조 1. 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연방의 집행권을 행사한다.
2. 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연방정부의 총리·부총리·연방 각료로 구성한다.

- 제111조 1. 러시아연방정부 총리는 국가두마의 동의를 얻어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2. 러시아연방정부 총리후보에 대한 추천은 새로 선출된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취임하거나, 러시아연방정부가 사퇴한 후 2주 이내에, 또는 국가두마에 의하여 후보가 거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정부 총리후보를 그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4. 추천된 러시아연방정부 총리후보를 국가두마가 3회 거부하는 경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정부 총리를 임명하고, 국가두마를 해산·새로운 선거를 실시한다.

- 제112조 1. 러시아연방정부 총리는 임명된 후 1주 이내에 연방집행기관구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대통령에게 제출한다.
2. 러시아연방정부 총리는 러시아연방정부 부총리·연방각료 후보자를 러시아연방대통령에게 추천한다.

- 제113조 러시아연방정부 총리는 러시아연방 헌법·연방법률·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정부의 기본활동방향을 결정·업무를 조직화한다.

- 제114조 1. 러시아연방정부는 ;
1. 연방예산을 편성하여 국가두마에 제출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며, 연방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국가두마에 제출하며,
2. 러시아연방에서 조화로운 재정·신용·금융정책의 수행을 보장하며,
3. 러시아연방에서 문화·과학·교육·보건·사회보장·생태학 분야의 국가정책수행을 보장하며,
4. 연방재산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며,

5. 국가보위·국가안전·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며,
 6. 준법성, 시민의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범죄퇴치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7. 러시아연방헌법, 연방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부에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2. 러시아연방정부의 활동절차는 러시아연방헌법적 법률로 규정한다.

- 제115조 1. 러시아연방 헌법·연방법률·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기초한 그 집행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정부는 각종규칙과 명령을 발포하며, 그 집행을 보장한다.
2. 러시아연방정부의 규칙·명령은 러시아연방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3. 러시아연방정부의 규칙과 명령이 러시아연방 헌법·연방법률·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에 저촉되는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제116조 새로이 선출된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의 취임직전 종래의 러시아연방정부는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 제117조 1. 러시아연방정부는 사퇴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3.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표결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정부 불신임에 대한 결정은 국가두마대의원 재적 대의원 과반수로 채택된다. 국가두마에 의하여 러시아연방 정부의 불신임표결이 있는 후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정부의 사퇴를 공표하거나, 국가두마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국가두마가 3월이내 러시아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재표결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정부사퇴를 공표하거나 국가두마를 해산한다.
4. 러시아연방정부 총리는 러시아연방정부 신임여부에 관한 문제를 국가두마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두마가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대통령은 7일 이내에 러시아연방정부 사퇴나 국가두마해산 및 새로운 선거지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다.

5. 사퇴 또는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경우, 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제 7 장 사법권

- 제118조 1. 러시아연방에서 재판은 법관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2. 사법권은 헌법·민사·행정·형사소송을 통하여 행사된다.
3. 러시아연방의 사법제도는 러시아연방의 헌법·연방헌법적 법률로 규정한다. 특별재판소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9조 법관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25세에 달하고, 고등법학교육을 받고 5년 이상의 법률실무경험이 있는 러시아연방 시민이다. 러시아연방 재판소의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연방법률로서 규정할 수 있다.

- 제120조 1. 법관은 독립적이며,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법률에만 복종한다.
2. 법관은 사실심리에 있어서 국가·기타 기관의 법령이 법률에 위배됨을 확인하고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 제121조 1. 법관은 파면되지 아니한다.
2. 법관의 권한은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사유에 의해서만 중지 또는 일시 정지될 수 있다.

- 제122조 1. 법관은 불가침권을 가진다.
2. 법관에게는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

- 제123조 1. 모든 재판의 심리는 공개한다. 비공개법정에서의 심리는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2. 형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궤석심리는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재판은 사건성과 당사자평등의 기초하에 진행한다.
4.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재판은 배심원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제124조 재판소의 재정은 연방예산으로만 부담하며, 연방법률에 따른 완전하고 독립적인 재판의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5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1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 연방회의 · 국가두마 · 연방회의 의원 혹은 국가두마 의원의 5분의 1 · 러시아연방정부 ·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와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 · 러시아연방 주체의 입법 및 집행권력기관의 다음과 같은 질의와 관련한 러시아연방 헌법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사실을 판단한다.

1. 연방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 · 연방회의 · 국가두마 · 러시아연방 정부의 통상적인 법령
2. 공화국의 헌법 ·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관한 문제,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 및 러시아연방 주체의 국가권력기관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된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령 · 통상적인 법령
3.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 · 러시아연방 주체의 권력기관간의 조약, 러시아연방 주체의 권력기관간의 조약
4.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

3.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권한에 관한 쟁의를 심판한다.

1. 연방국가권력기관간
2.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 · 러시아연방 주체의 권력기관간
3. 러시아연방 주체의 최고국가기관간
4.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 · 자유의 침해에 대한 소원 및 법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였거나 적용하게 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5.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 연방회의 · 국가두마 · 러시아연방정부 · 러시아 연방 주체의 입법권력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러시아연방 헌법의 해석을 제시한다.

6. 위헌으로 판단된 법령이나 그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러시아연방의 헌법에 위배되는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은 시행·적용되지 아니한다.
7.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연방회의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국가반역이나 기타 중한 죄를 범하였다는 질의를 한 경우, 기소제기에 규정된 절차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

제126조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는 민사·형사·행정 및 기타 사건과 산하 일반사법재판소에 대한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그 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127조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는 경제쟁의, 중재재판소의 심리대상인 기타 사건을 심판하는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그 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 제128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의 재판관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회의에서 임명한다.
 2. 기타 연방재판소의 판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3.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 및 기타 연방재판소의 권한과 조직·활동절차는 연방헌법적 법률로 규정한다.

- 제129조
1. 러시아 연방의 검찰은 통일적이며 중앙집권화된 체제를 이루며 하급검사는 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에게 복종한다.
 2.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회의에 의하여 임명·해임된다.
 3. 러시아연방주체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그 러시아연방주체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기타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5. 러시아연방 검찰의 권한, 조직 및 활동 절차는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제 8 장 지방자치

- 제130조 1. 러시아연방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지방적 문제의 독립적인 해결, 지방자치 재산에 대한 소유·사용 및 처분을 보장한다.
2. 지방자치는 주민투표·선거·기타 직접적 의사표시방법, 지방자치의 선거·기타 기관을 통하여 시민에 의하여 실현한다.

- 제131조 1. 지방자치는 도시·농촌 기타 지역에서 그 지방의 역사·기타 지역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기관의 조직은 독립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계선 변경은 해당지역 국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 제132조 1. 지방자치기관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재산을 관리하며, 지방예산을 편성·승인·집행하며, 지방세 및 징수금 확정을 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기타 지역적 문제를 해결한다.
2. 지방자치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물자·자금의 이양과 함께 국가권한의 일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양된 권한의 행사는 국가가 통제한다.

제133조 러시아연방에서 지방자치는 사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 국가권력기관이 채택한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추가적 지출의 보충, 러시아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권리의 제한금지 등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제 9 장 헌법수정 및 개정

제134조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의 수정과 개정에 대한 제안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연방회의·국가두마·러시아 연방정부·러시아 연방주체의 입법(대의)기관, 연방회의의원 또는 국가두마대의원 5분의 1이상이 제출할 수 있다.

- 제135조 1. 러시아 연방헌법의 제1장·제2장 및 제9장의 규정은 연방회의가 개정할 수 없다.
2. 연방회의의원 및 국가두마대의원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러시아 연방헌법 제1장·제2장 및 제9장의 규정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경우, 연방헌법적 법률에 따라 제헌회의를 소집한다.
3. 제헌회의는 러시아연방헌법의 불변성을 지지하거나, 새 러시아연방헌법을 제헌회의 총 의원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러시아연방 헌법은 재적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136조 러시아연방헌법 제3장~제8장에 대한 수정은 연방헌법적 법률채택을 위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하며, 러시아연방주체의 3분의 2이상의 입법권력기관이 찬성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7조 1. 러시아연방의 구성체를 규정하는 러시아연방헌법 제65조에 대한 수정은 러시아연방으로의 수용·러시아연방의 새로운 헌법적 지위의 변경에 관한 연방헌법적 법률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
2.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러시아연방주체의 새로운 명칭은 러시아연방헌법 제65조에 삽입한다.

제 2 부

종결 및 경과규정

1. 러시아연방헌법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공포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3년 12월 12일의 국민투표일이 러시아연방헌법 채택일로 한다.
동시에 1978년 4월 12일에 채택되고 그후에 수정·보완된 러시아연방 - 러시아헌법의 효력은 중지된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구성 주권공화국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 대상·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의 지방·주·모스크바시·상트-베제르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대상 및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구성 자치주·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대상 및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또한 러시아 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기타 조약, 러시아 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의 조약 등 연방조약의 규정이 러시아연방헌법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러시아연방헌법 규정의 효력이 우선한다.

2. 이 헌법시행 이전에 러시아연방영토에서 적용되던 법률과 기타 법규는 러시아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
3. 러시아 연방 - 러시아 헌법(기본법)에 따라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일 부터 그가 선출되었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4. 러시아연방내각 - 정부는 이 헌법 시행일로 부터 러시아연방헌법에 규정된 러시아 연방정부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가지며, 이 후 러시아연방정부라고 명명한다.
5. 러시아연방에서 법관은 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재판한다.
이 헌법시행후 러시아연방의 모든 법관은 그들이 선임되었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권한을 보유한다. 결원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충한다.
6.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의 사실심리절차를 규정하는 연방법률의 효력이 발생시까지 해당사건에 대한 사법적 사실심리절차를 유지한다.
이 헌법의 규정에 따른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때까지 범죄용의자에 대한 체포·구금 및 구속의 이전절차가 유지된다.
7. 첫번째 소집되는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는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8. 연방회의의 첫번째 회의는 선거후 30일째 되는 날에 소집한다. 연방회의의 첫번째 회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개최한다.
9. 첫번째 소집되는 국가두마 대의원은 러시아연방정부의 구성원이다. 국가두마대의원인 러시아연방정부 구성원은 직무수행 관련 활동(혹은 비활동)에 대한 책임부문에서 대의원 불가침권에 관한 이 헌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번째 소집되는 연방회의 의원은 한시적으로 자기권한을 행사한다.

懸案分析 93-10 러시아 聯邦憲法

1993年 12月 24日 印刷

1993年 12月 28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 컴퓨터 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2,000원

